

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2002-33
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02. 4. 25.

제안자 : 산업개발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준농림지역안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,
-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지역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수정 주요 골자

-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된 부설주차장설치 대상지역은 “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한다.”를 “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시 모든 준농림지역으로 한다.”로 수정함(안 제13조제1항)

3. 따로 붙임

-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-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제1항중 “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한다.”를 “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시 모든 준농림지역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김제시 조례 제 호

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,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 (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 물 및 기준) <u><신 설></u></p> <p>① (생략) ② (생략)</p>	<p>제13조(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 물 및 기준)</p> <p>① <u>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농림 지역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</p>